



#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구성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근본적인 노인장기요양보호 대책을 연구·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관련공무원이 포함된 실무연구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2000년 2월 18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

- 우리 나라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올해로 전체인구의 7.1%인 337만명으로 이미 고령화사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10년후에는 10%인 503만명, 그리고 2022년에는 14.3%인 753만명으로 늘어나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 특히, 노인 중 질환비율이 높은 후기고령자의 수와 비율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노인들의 의료 및 간병에 대한 국가·사회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반면에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 기능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노인 장기요양보호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70세 이상 노인수(노인 중 비율): 2000년 200만명(59%) → 2010년 326만명(65%)
- 80세 이상 노인수(노인 중 비율): 2000년 48만명(14%) → 2010년 80만명(16%)

-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2000년 10.0% → 2010년 14.2%
- 의료비 증가
  - 전체의료비: 1985년 5830억원 → 1998년 9조 7000억원(16.6배)
  - 노인의료비: 1985년 280억원 → 1998년 1조 4910억원(53배)
-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에서는 장기요양보호 대상 수요의 중·장기 변화 예측 분석,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내용 및 자원 분석, 관리운영 및 재정방식의 연구·개발, 외국 제도의 비교 연구 등을 통하여 금년내에 단기 및 중·장기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나갈으로써 향후 고령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보건의료수요를 충족하면서 국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근본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임.
- 한편, 노인인구 17.2%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금년 4월부터 노인을 위한 별도의 개호보험제도를 시행하며, 독일에서도 이미 노인을 위한 사회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음.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오는 2월 9일부터 장기기증자 및 이식대기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통합·관리하여 장기를 이식받을 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정한다. 이와 함께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이 합법화되고 장기 매매를 교사·알선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규칙과 함께 공포절차를 거쳐 2월 9일부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장기이식의료기관과 등록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식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이식수술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을 3개권역으로 구분하여 의학적 응급도·대기시간·조직적합성·혈액형·나이·과거 기증 여부 등 각종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장기이식수술을 하고자 하는 병원과 장기기증자나 이식대기자를 등록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 뇌사판정은 전문의사·법조인·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함.
- 장기를 이식받아야 하는 환자는 의료기관 등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이식대기자로 등록하면, 등록기관에서 그 정보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게 되고, 기증자가 나타났을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이식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함으로써 누구든지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게 됨.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오는 2월 9일 국립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장기이식의료기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이식대상자 선정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등 공식업무를 시작함.

##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제도

장애인은 자신이 지닌 장애에도 불구하고 전인격적인 면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사회에 참여하길 원한다. 장애인 복지정책도 그러한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의료재활, 특수교육, 사회심리재활 등도 모두 장애인이 평등한 조건하에서 사회가 부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면서 자신의 삶의 보람을 찾아 나가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모든 면에서 평등한 조건을 누리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직업재활이 다른 전문재활서비스의 목적이자 재활의 꽃이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에게는 직업을 통한 자활·자립은 요원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런 연유로 인해 일반 사업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일거리를 마련해 주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장애인생산물 판로개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1999년 2월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규

정을 마련하고, 동년 12월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 후 금년도 1월 29일자로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제도 실시기준』을 마련, 제도 시행에 필요한 모든 법적 준비를 완료함.

- 금년도의 의무구매대상물품은 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 면장갑, 쓰레기봉투 등 6개품목이며,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 등이 소요물량의 일정비율(100분의 2 내지 20 이상, 품목별로 상이함) 이상을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사실 종전에는 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개척에 대해 장애인생산품 공동판매장 지원 외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거의 없고 그 책임이 개별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단체에 있었음. 그러나 장애인생산품의 의무구매제도를 통하여 50억원 이상 조달구매액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어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지속적인 일거리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본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각종 홍보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장애인생산품의 품질향상과 품질인증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

### 공익근무요원에게도 원격지 의료보험증 발급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상근예비역 포함)에게도 2월 15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 및 의료보험료부담을 감소토록 하기 위하여 원격지 의료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지역피보험자로서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만 원격지 의료보험증을 발급하여 왔던 것을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격지 의료보험증을 발급받는 공익근무요원은 최저 2,700원 이상의 보험료가 감소하게 된다.

-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근거한 원격지 의료보험증 발급제도는 최초 다보험자체제에서 실거주지와 중진료권의 상이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운영되었으나 증진료권이 폐지된 이후에도 일일생활권 확대에 따른 피보험자의 진료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음.

- 1999년 12월말 기준으로 지역피보험자의 원격지 의료보험증 발급은 51,801명이며, 이들은 학교문제 등으로 보호자와 떨어져 살고 있는 미혼인 재학생과 부모의 부득이한 사유로 타지역거주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영·유아 또는 취학이전의 아동들임.
-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복무기간 중에는 사실상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없으며, 특히 보호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고 있거나 복무기관 소재지와 실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초래되는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 및 보험료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격지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기로 함.